

**간 방 지 구 소 규 모 용 수 개 발 사 업 에 따 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015. 11.



예 천 군

제1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목적 및 배경

가. 계획의 목적 및 배경

- 본 계획은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간방리, 승본리, 신월리 일원으로 수해구역 대다수는 농업이 주업인 곳으로 가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농업용지에 대한 충분한 용수 공급에 한계가 있어 양수장 및 송수관로를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양수장 및 송수관로 설치로 인해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영농기계회로 안전 영농에 기여하며,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확보와 관개개선, 토지이용을 제고, 토지생산성 증대를 통한 소득증대로 지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본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공사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과 장·단기적인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을 저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검토하고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과학적 재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관련 [별표2] .개발기본계획 -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이며, 시행령 제7조 제2항 관련 [별표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종류·규모 및 그 협의요청시기는 <표 1 - 1>과 같다.

<표 1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파. 특정지역의 개발	2)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계획의 확정전

자료 : 개발기본계획 (시행령 제7조 제2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1.3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근거

가. 개요

(1)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24조, 시행령 제10조, 제33조

- (공개)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법 제11조 및 제24조에 의거, 영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개발기본계획도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함.

(2)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현황

-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 공개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 (www.ycg.kr)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게재

1.4 계획의 내용

가. 사업명 : 간방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나.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간방리, 승본리, 신월리 일원

다. 사업시행자 : 예천군

라. 사업시행기관 : 2016 ~ 2018년 (3개년)

마. 승인기관명 : 경상북도

바. 계획의 내용

(1) 개발내용

- 수혜면적 : 48.5ha (신규 : 30.0ha, 보강 : 11.0ha, 기설 : 7.50ha)
- 개발면적 : 48.5ha (신규 : 30.0ha, 보강 : 11.0ha, 기설 : 7.50ha)

(2) 주요 공사

(가) 수원공

- 양수장 : 수중모터펌퍼(110KW(150HP)×3대, 예비1대), 총양수량 14,014m³/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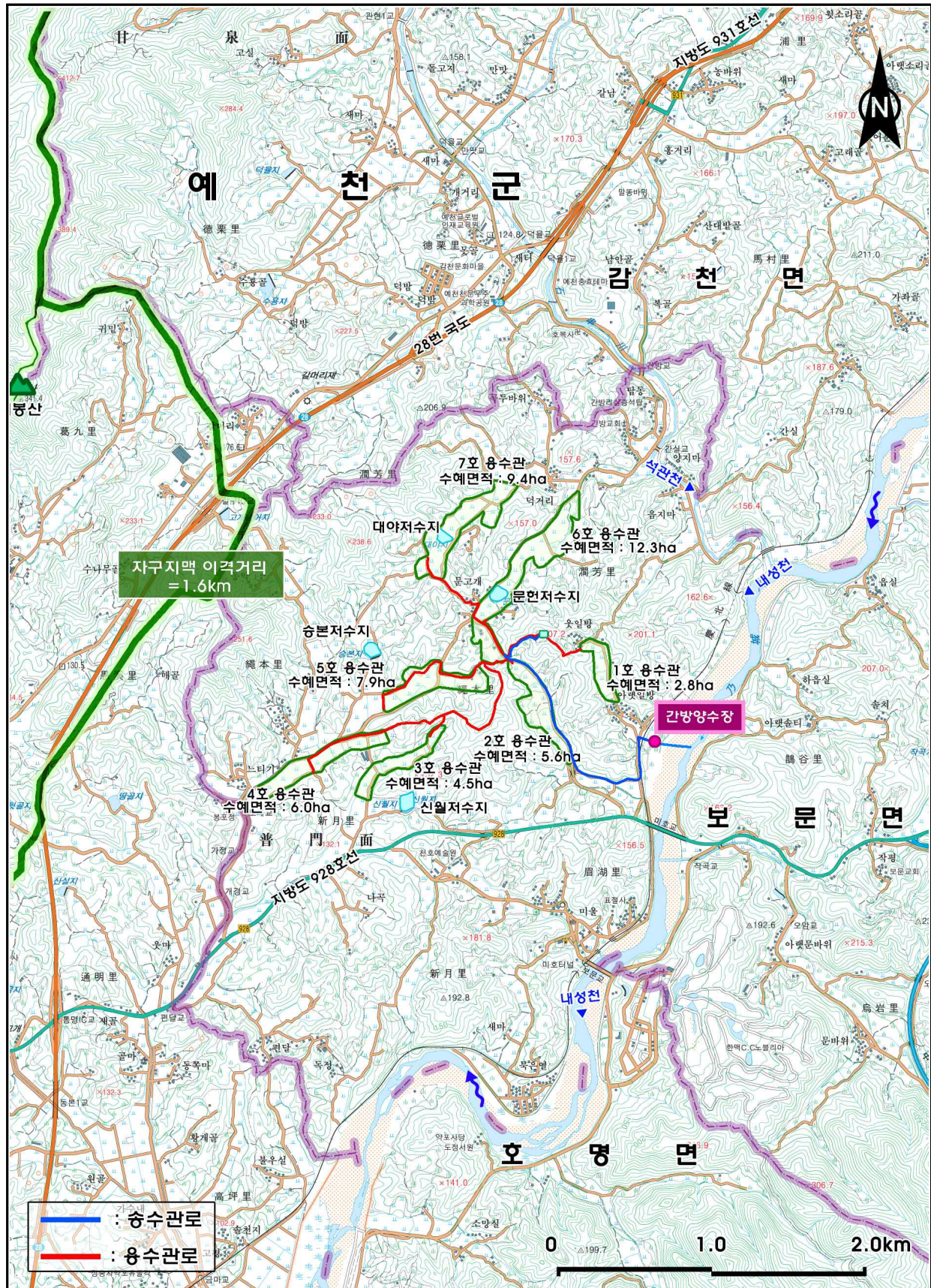
(나) 평야부

- 송수관로 : 1조, L=2,015.0m
- 용수관로 : 8조, L=4,804.0m
- 용수로 : 2조, 692m

사. 사업비 : 4,000백만원

아. 기타사항

- 농업진흥지역 면적 : 32.5ha(총 수혜면적의 67.01%)
- 경지정리 면적 : 40.5ha(총 수혜면적의 38.51%)



<그림 1 - 4> 계획지구 위치도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1 환경영향평가협의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맞추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사업계획 면적이 6만 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의견을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 본 사업계획의 면적이 60,000㎡미만에 해당하므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생략하였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평가항목·범위의 등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맞추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표 2 -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 생략 근거

구 분	항 목	내 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심의를 필요하지 않은 평가항목 등의 결정 대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법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2.2 평가항목

2.2.1 평가항목의 설정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분석을 위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하였으며,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악영향이 미미한 평가항목은 제외하였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2 - 2> 주요 환경영향평가항목의 선정

구 분	주요 평가 항목
자연환경의 보전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지형·지질, 위락·경관, 수질, 수리·수문
생활환경의 안전성	대기질, 소음·진동, 친환경적 자원순환
사회·경제성과의 조화성	토지이용, 인구·주거

<표 2 - 3> 평가항목의 선정 및 제외사유

구 분	평가항목	선정 (제외) 사유
평가 항목 (9개)	동·식물상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 서식현황 및 동식물상의 서식형태 변화
	지형·지질	■ 계획지구의 부지정지를 위한 절·성토로 인한 지형의 변화가 예상됨
	위락·경관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가 예상됨
	수 질 (수리·수문)	■ 공사시 강우에 의한 우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
	대 기 질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날림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영향
	소음·진동	■ 공사시 건설장비의 투입으로 인해 인근지역에 미치는 소음·진동영향 ■ 사업시행시 소음·진동영향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투입장비 가동,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폐유 및 생활폐기물 발생 ■ 공사시 건설폐기물 및 임목폐기물 발생
	토지이용	■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편입토지 발생 등
	인구·주거	■ 계획지구 공사 및 운영시 인구 이동에 따른 변화
현황조사 항목 (2개)	기상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대기질 예측 기초자료로 이용
	자연환경자산	■ 자연환경자산의 변화

<표 계속>

구 분	평가항목	선정 (제외) 사유
제외항목 (6개)	해양환경	■ 계획시행 주변에는 해양이 위치하지 않아 평가항목에서 제외함.
	악 취	■ 본 계획지구에는 악취유발시설이 계획되어 있지 않아 평가항목에서 제외함.
	일조장해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하여 평가항목에서 제외함.
	전파장해	■ 전파장해유발시설이 계획되어 있지 않아 평가항목에서 제외함.
	위생·공중보건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하여 평가항목에서 제외함.
	산 업	■ 산업구조 변화가 미미하여 평가항목에서 제외

2.2.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평가의 범위는 사업특성 파악 및 지역상황 등의 환경현황조사 실시 후, 직·간접적인 영향권과 장·단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각 항목의 특성에 맞게 평가 범위를 선정하였다.

<표 2 - 4>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의 예측범위

항목		구분	대상지역의 설정 사유	대상지역의 범위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 서식현황 및 동·식물상의 서식형태 변화	■ 계획지구 및 주변 0.5km지역이내
		자연환경 자산	■ 자연환경자산의 변화	■ 계획지구 및 주변 0.5km지역이내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계획지구의 부지정지를 위한 절·성토로 인한 지형의 변화가 예상됨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가 예상됨	■ 계획지구 및 주변 1.0km지역이내
	수환경의 보전	수질	■ 공사시 강우에 의한 우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기상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대기질 예측 기초자료로 이용	■ 인근기상대 (안동기상대)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날림먼지 및 대기 오염물질에 의한 영향 ■ 운영시 연료사용 및 이동차량에 의한 오염물질 발생	■ 계획지구 및 주변 1.0km지역이내
		소음·진동	■ 공사시 건설장비의 투입으로 인해 인근지역에 미치는 소음·진동영향 ■ 사업시행시 소음·진동영향	■ 계획지구 및 주변 1.0km지역이내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투입장비 가동,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폐유 및 생활폐기물 발생 ■ 공사시 건설폐기물 및 임목폐기물 발생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토지이용	■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편입토지 발생 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2.3 환경영향평가 예측 및 분석에 관한 내용

- 본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시 적용된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예측기법, 내용, 관련 자료는 다음 <표 2 - 5>과 같다.

<표 2 - 5>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의 예측방법

구분 항목			예측 및 분석기법	관련자료 및 사용근거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본 계획시행으로 변화가 불가피한 동·식물상 변화 정도를 현지조사를 통해 분석	◦ 현존식생 및 녹지자연도 ◦ 전국자연환경조사보고서 ◦ 생태자연도 ◦ 국토환경지도
		자연환경 자산	◦ 기존자료 조사 분석 ◦ 현지조사	◦ 환경부 homepage (http://www.me.go.kr)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계획지구의 기존자료 조사 및 현지 조사를 통한 지형변화 파악	◦ 지형도 및 한국지질도 ◦ 사업관련토질조사보고서 ◦ 현지조사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 부지정지공사에 따른 지형의 변화 분석 ◦ 계획지구의 장래 경관변화예측 ◦ 기존자료 조사 분석 및 현지조사	◦ 사업관련계획 및 유사사업 참조 ◦ 주변지형분석 ◦ 조망점분석
	수환경의 보전	수질	◦ 수질현황조사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근 하천에 미치는 영향	◦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 기존자료 조사 ◦ 원단위 적용
	기상		◦ 계획지구 인근 안동기상대의 최근 10년간 기상 자료 분석	◦ 기상연보 (2005~2014)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 대기질 현황분석 ◦ 공사시 장비가동 및 미세먼지, NO ₂ 영향을 대기 확산식을 이용 예측	◦ 기상 기초자료 ◦ 현지 조사 결과 ◦ ISC Manual. US.EPA
		소음· 진동	◦ 소음·진동 현황조사 ◦ 공사시 투입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도를 거리감 쇄식으로 예측	◦ 사업장 소음의 방지대책 에 관한 연구(I)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성상별로 예측하고 이에 따른 처리대책 수립	◦ 예천군 통계연보(2014) ◦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 현황 (2014)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토지이용	◦ 계획지구의 사업계획 검토	◦ 예천군 통계연보(2014)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간방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로 설정한다.
- 대상지역의 설정방법은 사업특성과 입지여건 및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평가·분석하기 위하여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분야별로 구분한다.

<표 3 - 1> 전략환경영향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구 분	평가대상지역		비고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간방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예천군 보문면 간방리, 승본리, 신월리 일원	공사시, 운영시	

3.2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의 예측범위

-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상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평가대상지역 및 예측범위를 설정하였다.

<표 3 - 2>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의 예측범위

검토항목			선 정 사 유		검 토 사 항	시간적 범위
			방 법	공간적 범위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현지 및 문헌조사 ◦ 생태영향범위 파악	계획지구 일원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 서식현황 및 동·식물상의 변화 파악	공사시 운영시
		자연환경 자산	◦ 현지 및 문헌조사 ◦ 영향범위 파악	계획지구 일원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자산 현황	공사시 운영시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현지 및 문헌조사 ◦ 계획내용분석	계획지구 일원	■ 지형·지질 현황조사 ■ 공사시 절·성토에 따른 지형변화 및 토사유출, 사면발생	공사시 운영시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 관	◦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변화 예측	계획지구 일원	■ 계획시행으로 경관의 변화	공사시 운영시
	수환경의 보전	수 질	◦ 현지 및 문헌조사 ◦ 합리식	계획지구 일원	■ 공사시 절·성토에 의한 토사발생 ■ 현장인력에 의한 오수 및 분뇨 발생	공사시 운영시
		수리·수문	◦ 관개개선에 따른 홍수위 등의 변화	홍 계획지구 일원	■ 공사시 수리·수문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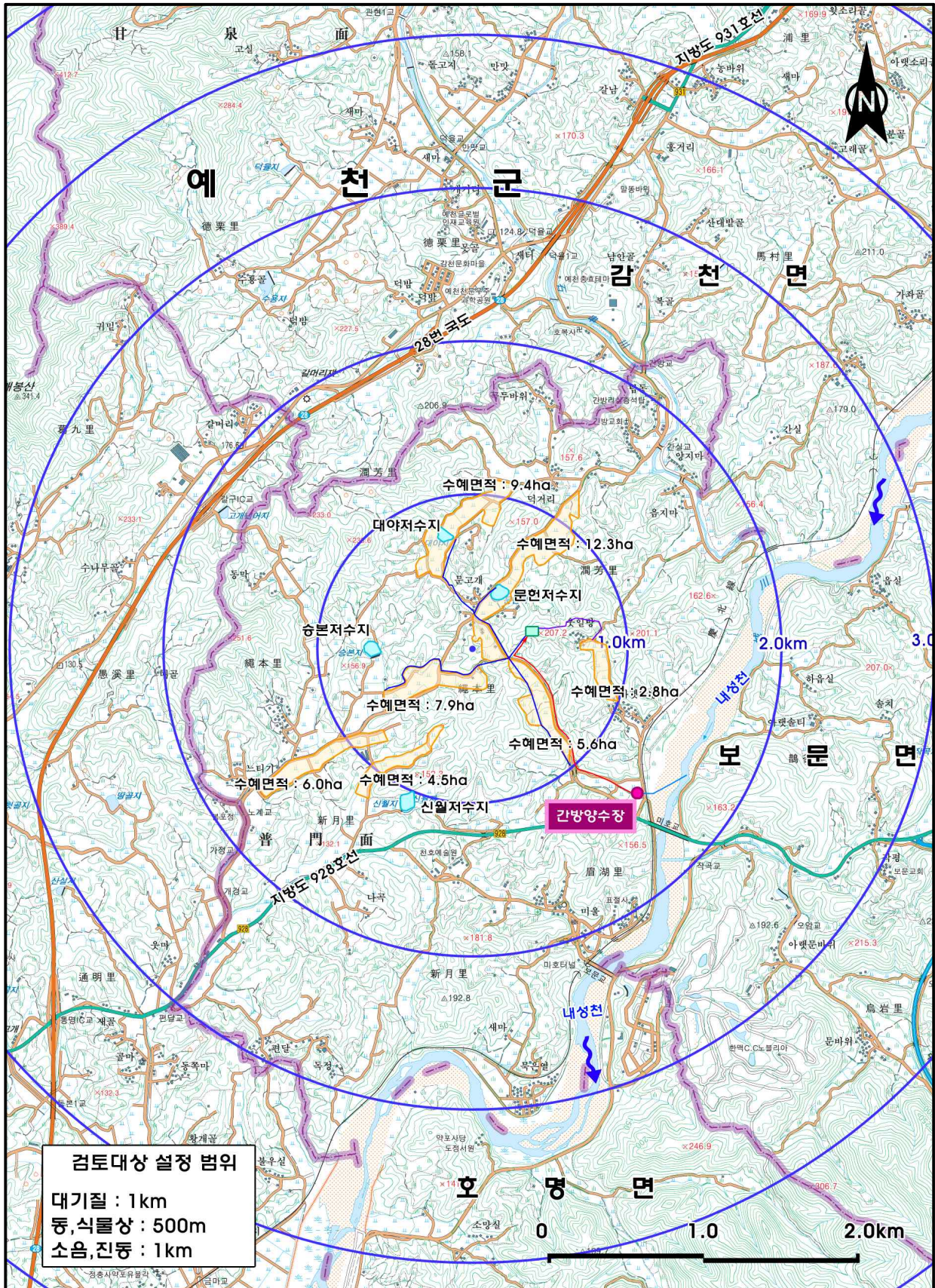
<표 계속>

검토항목		선 정 사 유		검 토 사 항	시간적 범위
		방 법	공간적 범위		
자연 환경의 보전	기 상	◦ 안동기상대 기상자료 분석	계획지구 일원	■ 지형지질, 대기질, 수질의 기본 요소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생 활 환 경 의 안 정 성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 현지 및 문헌조사 ◦ 대기질모델활용	계획지구 일원	■ 계획지구 인근 대기질 현황 조사 ■ 공사시 대기질 영향 예측	공사시 운영시
		소음·진동 ◦ 현지조사 ◦ 공사시 영향예상지역 예측	계획지구 일원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소음·진동 현황 조사	공사시 운영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현지조사 ◦ 원단위 적용	계획지구 일원	■ 공사시 인부 투입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및 분뇨발생 ■ 공사시 장비 사용에 따른 폐유 발생 및 임목폐기물 발생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공사시 운영시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토지이용	◦ 현지 및 문헌조사 ◦ 계획내용분석	계획지구 일원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상의 변화	공사시 운영시

- 각 항목별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을 시행하고 예측결과에 따라 적절한 저감 방안을 제시한다.

<표 3 - 3> 주요 평가항목별 환경영향에 따른 환경보전 방안

항 목	예상되는 영향	환경보전방안
대기질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공사장비 투입으로 인한 오염발생	◦ 공사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대책 수립
수 질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 하천수질 영향	◦ 공사시 및 운영시 주변 하천수질 영향 최소화 대책 수립
지형·지질	◦ 공사시 절·성토로 인한 사면안정성	◦ 사면안정화 대책 수립
동·식물상	◦ 식물상, 식생 및 동물상의 변화	◦ 동·식물상 변화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폐기물 발생	◦ 공사시 각종 폐기물 저감대책 수립
소음·진동	◦ 공사시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 공사시 소음·진동 최소화 대책 수립
경 관	◦ 시설물 설치로 인한 경관변화	◦ 경관변화를 최소화할 저감대책 수립



<그림 3 - 1> 평가대상지역 설정 위치도

제4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4.1 주민의견수렴 계획

4.1.1 주민의견수렴 개요

가.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상 간방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따라 전략환경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계획의 성격
2.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3.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
4.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5. 그 밖에 환경기준 유지 등과 관련된 사항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계획(이하 "정책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설명회의 개최)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하나의 시·군·구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상 간방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13조에 따라 전략환경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사전 주민의견 청취하고자 공람·공고를 시행하고 공람기간내에 주민설명회를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4.1.2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정 흐름도

